

미국의 정부지원 자원봉사 활동 관리체계

(최성재: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)

1. 역사

- 1961년 Kennedy대통령 시 Peace Corps(국제자원봉사단)창단
- 1964년: Johnson대통령 시 VISTA(Volunteers in Service to America: 미국을 위한 자원봉사기구) 창설
- 1965년 Foster Grandparent Program(FGP: 양연조손 프로그램 시행(Pilot Program)
- 1968년 Senior Companion Program(SPC: 시니어 동반자 프로그램- 한국의 노노케어 프로그램과 유사) 시작
- 1971년: Nixon대통령 시 Senior Service Program (3가지) + Peace Corps + VISTA -> ACTION Agency로 통합
Retired Senior Volunteer Program(RSVP: 은퇴시니어 자원봉사 프로그램- 재능나눔 프로그램) 시작
- 1973년 국내자원봉사법(Domestic Volunteer Act) 제정에 의해 3가지 Senior Service Program 재 인정
Senior Service Programs이 Senior Corps로 통합
- 1989년 Bush대통령 의 백악관에 자원봉사 사무실 설치 및 Point of Light Foundation 설립
- 1990년 Bush대통령시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Act 제정으로 기존 국가지원 서비스 통합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 서비스 위원회(Commission on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) 창설
- 1992년 Bush대통령시 탈냉전으로 유희인력이 된 군무요원의 사회적 활용을 위해 국가시민 지역사회단 (National Civilian Community Corp: NCCC) 창설
- 1993년 Clinton대통령 시 국가 및 지역사회 서비스 재단법(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Trust Act) 제정으로 NCCC와 Commission on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가 통합되어 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(CNCS)가 설립
*Retired Senior Volunteer Program(RSVP)은 Retired and Senior Volunteer Program(RSVP)으로 변경
- 2002년 Bush대통령시 USA Freedom Corps 청설. 9/11사태 이후 George Bush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미국민에게 생애 중 2년 또는 4,000시간의 봉사활동 요청
- 2009년 Obama대통령시 Edward M. Kennedy Serve America Act 제정으로 CNCS의 국가 자원봉사 강화

2. 정부지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전달체계



CNCS는 연방정부 조직으로 각 주에 사무소 설치하고 운영

3. CNCS(국가 및 지역사회 서비스 재단)에 대한 소개

1. 역사적 산물: 1960년대부터의 미국 정부지원의 국내외 자원봉사 서비스의 다양한 활동과 관리단체들이 각 행정부에 따라 변화해 오다가 1990년 국가 및 지역사회 서비스 법(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Act) 제정으로 기존의 국가지원 자원봉사 활동 기구가 국가 및 지역사회 서비스 위원회(Commission on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)로 통합되고, 이 위원회가 1992년에 창설된 NCCC를 통합하여 CNCS로 창설됨
2. 근거법: 현재는 2009년에 제정된 Edward M. Kennedy Serve America Act에 의해 CNCS 활동이 확대됨과 동시에 근거법이 되고 있음
3. 기본적 역할: 미국의 국가적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시민의 에너지와 재능을 동원하는 서비스와 자원봉사 활동으로 비영리 부분 서비스를 강화하는 역할. 여기에는 미국 시민은 누구나 자신의 서비스로 지역사회를 다르게 변화시킬 수 있고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신념이 뒷받침되고 있음
4. 미션과 적용 원칙
 - 1) 미션: 서비스와 자원봉사를 통해 생활을 개선하고 지역사회를 강화하고 시민의 공익활동 참여를 촉진함
 - 2) 주요 적용 원칙
 - (1) 지역사회 욕구를 제1 순위로 삼는다.
 - (2) 지역사회가 재난에 대한 준비와 대응을 포함한 사회적 욕구 해결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보다 강하고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한다.
 - (3) 제공되는 서비스, 참여자, 참여조직, 국가적 서비스 문화의 효과를 측정하고 계속 개선한다.
 - (4) 프로그램 및 연방정부 프로그램과 협력을 구축한다.
 - (5) 지역의 다양한 단체들을 돕는다.
 - (6) 평생 동안 시민참여를 촉진하도록 서비스-학습 원칙을 적용한다.

4. Senior Corps (시니어 자원봉사단)

1) Foster Grandparent Program (조손 양연 프로그램)

- (1) 참여 대상: 55세 이상 빈곤선 200% 미만(고소득자도 참여 가능)
 - 적정 신체검사 필요(신청 시 및 매년)
 - 차별 금지(학력, 경험, 인종, 국적, 성별, 종교, 연령, 정치적 성향, 군복무 여부, 결혼 여부 등)
 - 소득기준 이상자도 참여 가능(수당 지급 않음)
 - 범죄 기록 확인 필요
- (2) 서비스 대상 및 서비스: 특별 및 예외적 욕구/문제가 있는 시설아동, 학교 아동, 특별 상황 아동(21세 미만)에 대한 역할 모델, 멘토링 및 친구
- (3) 수행기관(sponsor agency): 공공기관, 인디언보호기관, 민간 비영리의 일반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로 자원봉사자를 (1) 다양한 방법으로 모집하고 (2) 채용시 20시간의 사전 봉사를 포함한 40시간 오히엔테이션 및 훈련 실시, (3) 매월 4시간의 현장훈련 실시, (4) 사업 수행을 위한 추가적 비용모금 책임, (4) 자문위원회 운영요청
- (4) 수행기관 선정방식: 공모
- (5) 수행기관 산하 봉사자 관리처(volunteer station): 수행기관은 직접 봉사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산하 기관 체계를 갖추어야 함(관리처는 공공/민간, 영리/비영리 및 종교/무종교기관 가능). 수행기관과 MOU 체결
 - *봉사자 관리처의 예: 등교전/방과후 프로그램, 장애인 서비스 센터, 양연보호기관, 초등학교, 학령전 저소득층 학습개발센터, 청소년교정시설, 차터스쿨(공적 자금으로 받아 교사, 부모, 지역단체 등이 설립한 학교), 중고등학교 등
- (6) 수행기관의 예산신청: 1인당 연간 최대 \$6,000 범위까지 신청 가능, 지원금의 20%만 행정비용 사용. 수행기관당 \$500,000이상 지원 불가

- (7) 수행기관에 대한 제한
 - 선거나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금지
 - 종교적 활동 금지
 - 차별 금지
 - 노동/반노동운동 금지
 - 기존 피고용자의 행동을 제약한 해동 금지
 - 서비스 비용 수수 금지
 - 친인척 관계 배제
 - 봉사자의 위상 견지(정부 공무원, 조직직원, 수행기관 직원이 아님)
- (8) 수행기관 활동 평가
- (9) 참여자 활동
 - 참여시간: 주당 최소 15시간 최대 40시간, 연간 2,088 시간 초과 불가
 - 수행기관의 참여자에 대한 활동지침과 관련 규정 서면 통지
 - 활동: 지정된 아동에 대해 지정된(서술된) 역할 수행
- (10) 참여자 보상(고소득층은 수당지급 없음)
 - 교통비 포함 과업수행 관련 비용(MOU에 규정 내용)
 - 참여자 비용은 연방정부 지원비용의 최소 80%
 - 보상비용은 조세나 복지프로그램의 소득인정 제외 (임금이 아님, 최저임금 및 고용보험 적용 제외)
 - 구체적 보상비용
 - * 수당(15-40시간)
 - 예: 시간당 비용 \$2.65 1년 최대 1,044시간(표준)
 - 경우 \$2,767(약 3,200,000원)
 - * 교통비(고소득자는 승용차운행 거리요금 보상가능)
 - * 식비(경우에 따라 다름)
 - * 보험(상해, 자동차 책임보험-개인 승용차 사용시)
 - * 신체검사 비용
 - * 제복/작업복 비용
 - * 서비스 인정 관련 비용

2) Senior Companion Program(시니어 동반자 프로그램)

- (1) 참여 대상: 다양한 개인적 기술과 상당한 힘을 가진 55세 이상 빈곤선 200%미만(고소득자도 참여가능)
 - 적정 신체검사 필요(신청 시 및 매년)
 - 차별 금지(FGP와 같음)
 - 소득기준 이상자도 참석 가능(수당 지급 않음)
 - 범죄 기록 확인 필요
- (2) 서비스 대상 및 서비스: 시니어의 고독과 사회적 고립 문제 해소, 이동(교통), 간단한 일, 전문가의 의료적 개입 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, 비공식적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설 입소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의 독립적 생활을 도움
- (3) 수행기관(sponsor agency): 공공기관, 인디언보호기관, 민간 비영리의 일반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로 자원봉사자를 (1) 다양한 방법으로 모집하고 (2) 채용 시 20시간의 사전 봉사를 포함한 40시간의 오리엔테이션 및 훈련 실시, (3) 매월 4시간의 현장훈련 실시, (4) 사업 수행을 위한 추가적 비용모금의 책임, (4) 자문위원회 운영요청
- (4) 수행기관 선정방식: 공모
- (5) 수행기관 산하 봉사자 관리처(volunteer station): 수행기관은 직접 봉사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산하 기관 체계를 갖추어야 함. (관리처 기관은 공공/민간, 영리/비영리 및 종교/무종교기관 가능). 수행기관과 MOU 체결
 - * 봉사자관리처 예: 가정방문 건강보호 기관, 민간 비영리 및 영리 보건의료 기관(의원 포함), 공공 및 민간 비영리 정신건강기관 및 협회, 노인복지관을 포함한 다목적 서비스 센터, 공공보건소, 공공 및 비영리 사회 서비스 기관, 재활기관, 방문간호 기관
- (6) 수행기관의 예산신청: 1인당 연간 최대 \$6,000 범위까지 신청 가능, 지원금의 20%만 행정비용 사용, 수행기관당 \$500,000이상 지원 불가

- (7) 수행기관에 대한 제한
 - 선거나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금지
 - 종교적 활동 금지
 - 차별 금지
 - 노동/반노동운동 금지
 - 기존 피고용자의 행동을 제약한 해동 금지
 - 서비스 비용 수수 금지
 - 친인척 관계 배제
 - 봉사자의 위상 견지(정부 공무원, 조직직원, 수행기관 직원이 아님)
- (8) 수행기관 활동 평가
- (9) 참여자 활동
 - 참여시간: 주당 최소 15시간 최대 40시간, 연간 2088 시간 이상 초과 불가
 - 수행기관의 참여자에 대한 활동지침과 관련 규정 서면 통지
 - 활동: 지정된 시니어에 대해 지정된(서술된) 역할 수행
- (10) 참여자 보상(고소득층은 수당지급 없음)
 - 교통비 포함 과업수행 관련 비용(MOU에 규정 내용)
 - 참여자 비용은 연방정부 지원비용의 최소 80%
 - 보상비용은 조세나 복지프로그램의 소득인정 제외 (임금이 아님, 최저임금 및 고용보험 적용 제외)
 - 구체적 보상비용
 - * 수당(15-40시간)
 - 예: 시간당 비용 \$2.65 1년 최대 1,044시간(표준)
 - 경우 \$2,767(약 3,200,000원)
 - * 교통비(고소득층은 승용차 운행거리 요금 보상가능)
 - * 식비(경우에 따라 다름)
 - * 보험(상해, 자동차 책임보험-개인 승용차 사용시)
 - * 신체검사 비용
 - * 제복/작업복 비용
 - * 서비스 인정 관련 비용

3) Retired and Senior Volunteer Program (RSVP: 은퇴자 및 시니어 자원봉사 프로그램)

- (1) 참여 대상: 다양한 개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55세 이상 자(300,000명 이상 참여의 가장 큰 노인 봉사사업)
 - 차별 금지(FGP와 같음)
 - 소득기준 적용 없음 (수당 지급 없음)
 - 범죄 기록 확인 필요
- (2) 서비스 대상 및 서비스: 대상자는 연령으로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재능(지식과 기술)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욕구 해결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.
- (3) 수행기관(sponsor agency): 공공기관, 인디언보호기관, 민간 비영리의 일반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로 자원봉사자를 (1) 다양한 방법으로 모집하고 (2) 훈련(현장훈련을 포함한 오리엔테이션), (3) 사업 수행을 위한 추가적 비용 모금의 책임, (4) 자문위원회 운영 요청
- (4) 수행기관 선정방식: 공모
- (5) 수행기관 산하 봉사자 관리처(volunteer station): 수행기관은 직접 봉사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산하 기관 체계를 갖추어야 함. (관리처 기관은 공공/민간, 영리/비영리 및 종교/무종교기관 가능). 수행기관과 MOU 체결
 - * 봉사자관리처 예: 등교전/방과후 프로그램,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, 교정시설, 초등학교, 환경 프로그램, 푸드뱅크, 학령전 저소득층학습개발센터, 건강교육센터, 병원 등 의료시설, 직업소개소, 중고등학교, 쉼터(노숙인, 학대자 등), 세무관계 센터, 보훈 서비스 센터 등
- (6) 수행기관 예산 신청: 자원봉사자 1인당 3년까지 지원 가능(1차년도 1인당 \$, 1,250, 2/3차년도 1인당 \$1,000), 전체비용의 최소 30%는 비연방지원금으로 조달), 수행기관당 총지원금 \$500,000이상 불가
- (7) 수행기관에 대한 제한
 - 선거나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금지
 - 종교적 활동 금지

- 차별 금지
- 노동/반노동운동 금지
- 기존 피고용자의 행동을 제약한 해동 금지
- 서비스 비용 수수 금지
- 친인척 관계 배제
- 봉사자의 위상 견지(정부 공무원, 조직직원, 수행기관 직원이 아님)
- (8) 수행기관 활동 평가
- (9) 참여자 활동
 - 참여시간: 주당 수 시간에서 최대 40시간
 - 수행기관의 참여자에 대한 활동지침과 관련 규정 서면 통지
 - 활동: 지정된 시니어에 대해 지정된(서술된) 역할 수행
- (10) 참여자 보상
 - 교통비(개인차량-운행 거리에 대한 비용, 카 풀의 의 경우는 운전자 차량에 대한 운행거리 비용, 대중교통비)
 - 식비(예산의 한계 고려, 가정 방문시도 고려 가능, 경우에 따라 미국노인복지법의 단체급식 프로그램(우리의 경로식당과 유사) 식사도 이용 가능(단체급식은 60세 이상에만 적용)
 - 보험(상해보험과 자동차 책임보험)
 - 제복/작업복 비용 및 관련 비용(모자, 가방, 배지 등)
 - 서비스 인정 관련 비용

연력처

<연방정부 본부>

주소: 250 E Street, SW, Washington, D.C. 20525, USA
 Phone: (800) 833-3722 E-mail: info@cns.gov
 Website: <http://www.nationalservice.gov>

<California주 사무소>

Ms. Laurie Cannady
 주소: 11150 W. Olympic Blvd. Suite 670
 Los Angeles, CA 90064, USA
 Phone: 310-235-7422, E-mail: ca@cns.gov.